

REACH
January 2008

Contents

REACH?

- 도입배경
- REACH Timeline
- 사전등록의 필요성
- 적용범위

Summary

REACH?

- REACH stands for **R**egistration, **E**valuation, **A**uthorization on **C**hemical

REACH제도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로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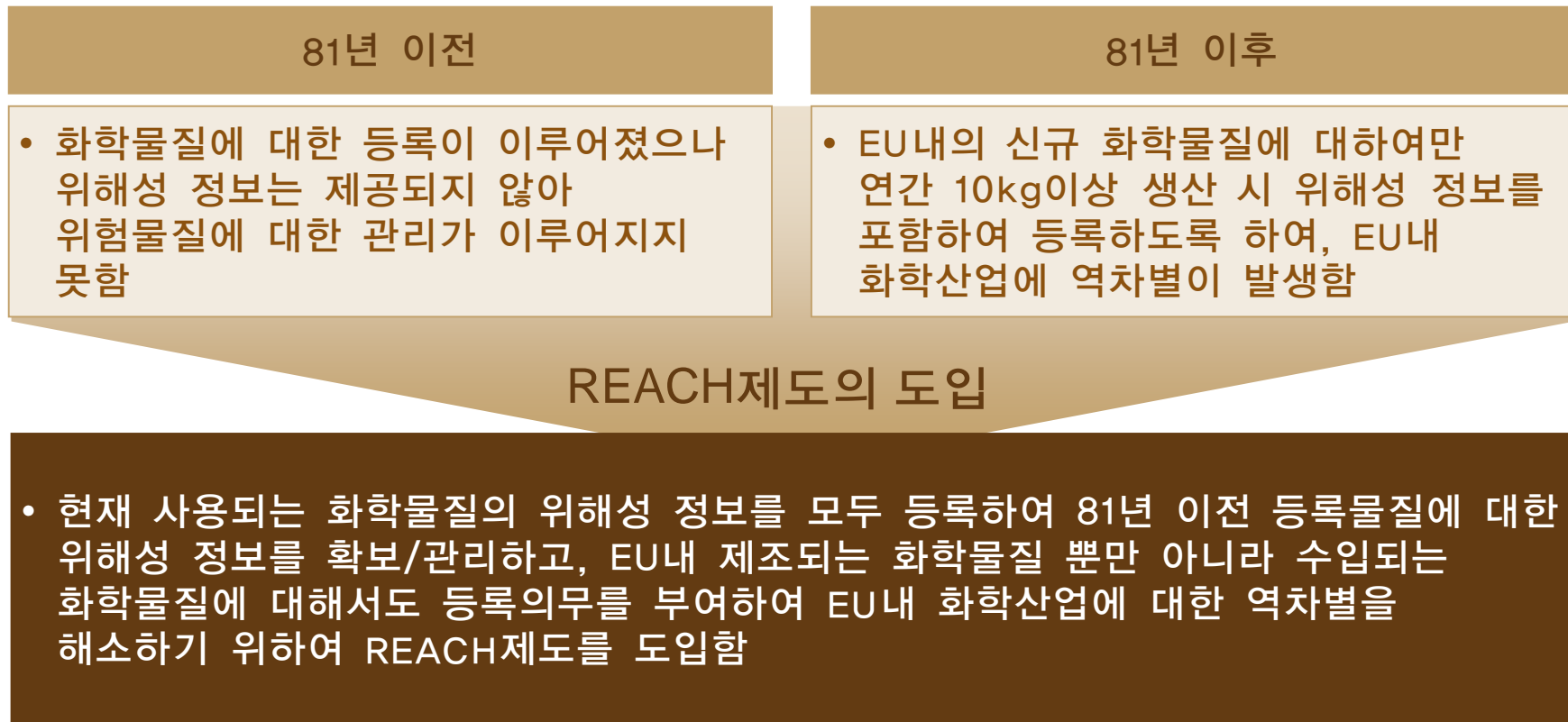
화학물질의 생산 또는 수입자가 EU내 년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 정보를 작성하여 등록하고, 감독기관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

또한, 지정된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허가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음

REACH

도입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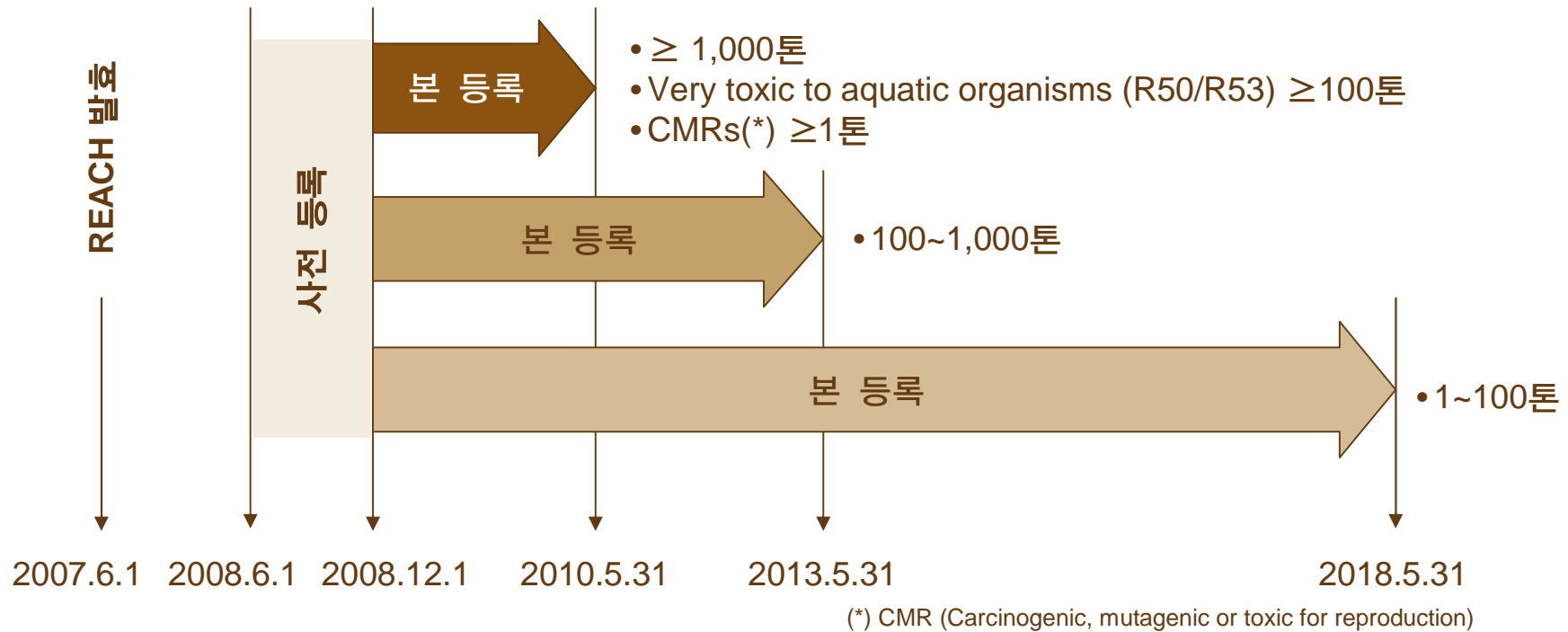
REACH제도는 EU의 기존 화학물질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새로이 도입된 화학물질관리제도 입니다.



REACH

REACH Timeline

2007년 6월 발효되어 사전등록(2008.6.1~2008.12.1)을 한 후, 물량 및 위해성을 기준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 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

※ 단, 사전등록하지 않은 물질의 경우 2008년 12월 1일부터 본 등록 시까지 수출이 제한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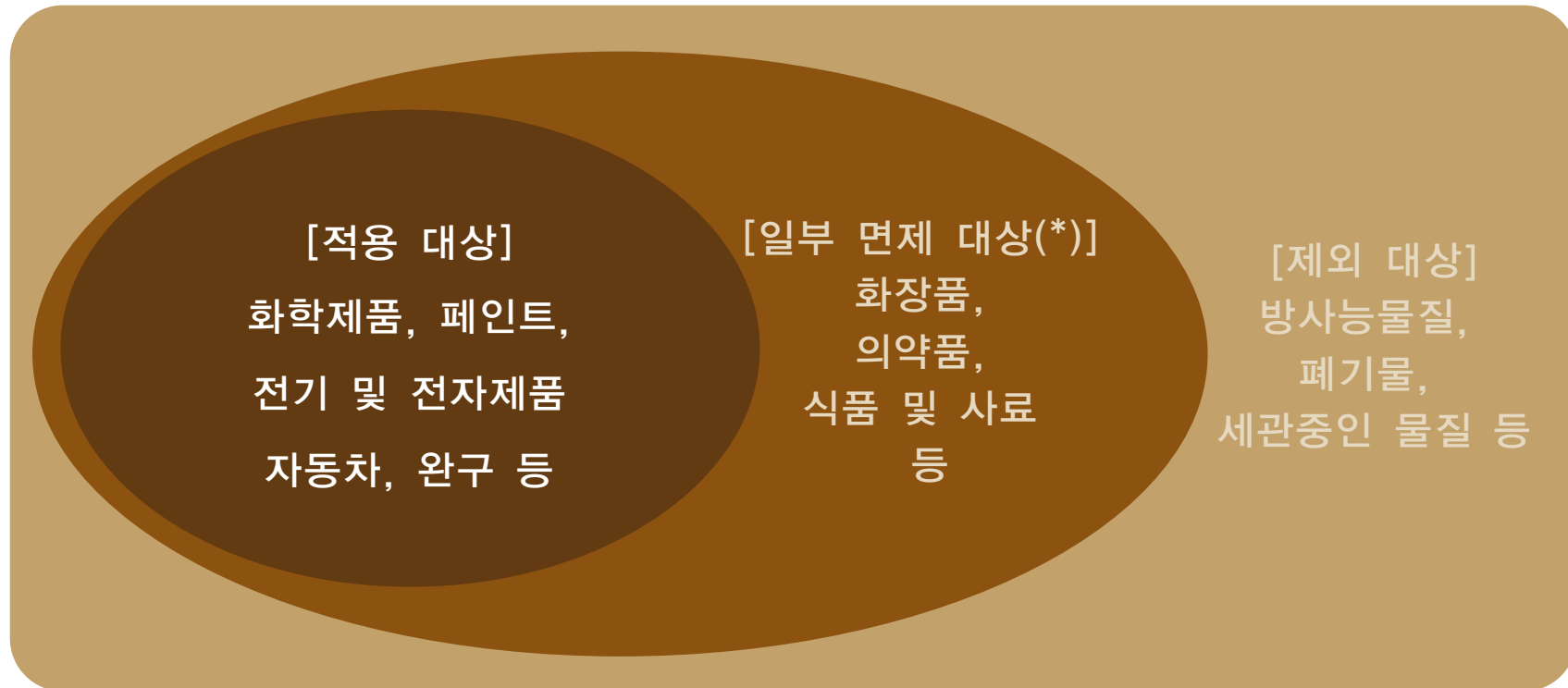
사전등록(Pre-registration)의 필요성

- 사전등록기한내에 사전등록을 하는 경우 물질량과 위해성에 따라 본 등록유예기간이 주어져 상대적으로 어려운 본 등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 -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008년 12월 1일 이후는 본 등록이 완료되어야 수출이 가능함
- 또한, 동일물질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.
 -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본 등록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등록 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 소요됨

REACH

적용 범위

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별도의 관리제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REACH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

(*) 일부 면제 대상의 경우 별도의 관리제도에 의하여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.

Summary

- REACH 제도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로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정책 발효 이후 EU지역 내 화학물질의 사용(제조, 수입)을 위해서는 물질정보 등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.

물질정보 등록과 관련된 의무사항이 방대하여 국내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, 지속적 EU수출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.

※ EU뿐만 아니라 미국, 일본 등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, 국내에서도 유사 제도 도입이 검토되는 등 향후에는 화학물질 등록이 필수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